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7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2. 7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이정문 · 박상혁
우상호 · 주철현 · 정태호
신현영 · 김주영 · 김두관
양경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에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의 7.3%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, 2017년에는 14.2%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. 노인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말 기준 전체인구의 17.5%를 차지하게 되었고,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.6%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 및 돌봄서비스는 물론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, 대응하는 서비스의 필요성과 수요가 늘고 있음.

이에 정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 및 질병 등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,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‘응급안전안심서비스’를 제공하고 있음.

이에 ‘응급안전안심서비스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대상도 노인가

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(안 제27조의5 신설).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5(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사고·화재 또는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(이하 “응급안전안심서비스”라 한다)를 제공하여야 한다.

1. 응급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
2. 응급상황 발생 시 대상자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
3. 안전교육 제공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노인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7조의5(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사고·화재 또는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(이하 “응급안전안심서비스”라 한다)를 제공하여야 한다.</u> <u>1. 응급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</u> <u>2. 응급상황 발생 시 대상자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</u> <u>3. 안전교육 제공</u> <u>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</u> <u>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노인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

	③ 제1항에 따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-	---